

# 건설공사 손해보험 적용 범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이 의 섭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slee@cerik.re.kr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설공사 여건상 사고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건설공사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거나 사고 피해 보전 비용으로 인하여 시공사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현재 정부 발주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모두 설계시공일괄 입찰 또는 대인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PQ 대상 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담보 범위는 계약 목적물에 의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추가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목적물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순계약 금액(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관급 자재비를 합한 금액이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보험 가입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정부 계약·입찰 집행 기준」 제60조).

##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손해 현황

건설공사의 손해보험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험 상품을 보면 '건설공사

**경영 정보**

보험'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s : CAR)과 '조립보험' (Erection All Risks Insurance : EAR)이다. 건설공사보험은 토목 또는 건축 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설비, 장치, 탱크, 철탑 등 각종 강구조물의 조립 공사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조립 물건이 공사장에 하역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하고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건설공사와 조립공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립공사 부분과 건설공사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전체 공사 금액의 50% 이상이 되는가에 따라 종류가 결정된다.

최근 10년(2003~2012년) 동안의 손해율은 건설공사보험이 46.3%, 조립보험이 30.3%이다(〈표 1〉, 〈표

2〉 참조). 2012년 현재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손해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보험은 경과 보험료가 2,249억원이고 발생 손해액이 767억원이어서 손해율은 34.1%이다. 조립보험은 경과 보험료가 890억원이고 발생 손해액이 231억원이어서 손해율은 25.9%이다.

이하에서는 18년이 지난 건설공사 손해보험 적용 범위의 적정성 등 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입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

모든 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당연히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형 공사라고 해서 위험이 크고 중소 규모의 공사라고 해서 위험이 작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도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현장의 일반적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는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비용이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비용은 당연히 공사 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예정가격

〈표 1〉 건설공사보험 계약 및 손해 추이

(단위 : 건, 천원, %)

회계 연도	계약 건수	보험 가입 금액	경과 보험료	발생 손해액	손해율
2003	1,386	43,439,269,201	137,192,152	106,003,267	77.3
2004	1,430	54,228,342,955	163,760,064	67,959,862	41.5
2005	1,248	97,307,507,869	195,800,602	54,681,452	27.9
2006	1,248	87,681,102,097	194,846,995	118,575,611	60.9
2007	1,296	72,052,730,673	188,642,207	69,351,669	36.8
2008	1,228	70,123,751,542	177,246,739	75,015,441	42.3
2009	1,762	96,009,449,438	201,546,061	64,940,340	32.2
2010	1,939	120,737,496,751	224,612,266	112,337,953	50.0
2011	1,749	103,253,274,273	210,858,023	142,873,736	67.8
2012	1,719	127,126,404,131	224,945,368	76,711,741	34.1
합계	15,005	871,959,328,930	1,919,450,477	888,451,072	46.3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www.insis.or.kr).

〈표 2〉 조립보험 계약 및 손해 추이

(단위 : 건, 천원, %)

회계 연도	계약 건수	보험 가입 금액	경과 보험료	발생 손해액	손해율
2003	5,906	20,898,744,735	35,941,136	28,026,948	78.0
2004	6,679	27,154,482,305	49,782,676	3,070,670	6.2
2005	7,145	51,506,095,873	69,316,570	10,289,871	14.8
2006	7,580	39,081,948,945	67,419,953	7,392,839	11.0
2007	8,110	42,334,331,604	59,836,239	22,907,723	38.3
2008	7,804	38,180,740,654	72,388,391	29,856,473	41.2
2009	6,887	33,790,802,774	66,674,987	35,051,686	52.6
2010	6,093	57,335,330,773	84,742,448	33,553,752	39.6
2011	5,761	56,679,793,083	89,485,096	14,455,998	16.2
2012	6,211	67,124,465,695	88,958,400	23,077,705	25.9
합계	68,176	434,086,736,441	684,545,896	207,683,665	30.3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www.insis.or.kr).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사에 투입될 자재비·노무비·경비는 물론 리스크 관리 비용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 입찰의 표준적인 계약서인 FIDIC 표준계약서는 공사 목적물과 공사 관계자의 재산 피해, 제3자의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의 공공공사에서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 목적물과 공사 관계자의 재산 피해, 제3자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 공사 목적물과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른 예산의 제약으로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 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한하여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보증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 배상 책임의 인적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만 의무화하고, 그 다음 제3자 배상 책임의 물적 손해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사로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같은 방법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현행 설계시공일괄 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

사와 PQ 대상 공사(경간 50m 이상 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는 현행대로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 제3자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 공사 목적물과 제3자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보험료 인하

앞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10년 간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은 46.3%이고, 조립보험은 30.3%이다.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70% 내지 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요율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보험요율을 건설공사보험은 33.8%, 조립보험은 39.7% 인하하여야 한다.<sup>1)</sup> 최근 10년 간 실적 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6.3%, 조립보험은 30.3%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코리안리재보험(주)(이하 코리안리)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코리안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

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 할인·할증 제도 도입

또한, 과거 건설업체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요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업체로 하여금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사고율은 공사의 종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건설업체의 위험 관리 노력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원래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하는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고 예방도 필요하다.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으로 사고 예방을 유인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은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건설업체가 갖가지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요율을 다른 건설업체보다 낮게 적용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건설공사보험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1) 요율 조정 요인은 (실적손해율/예정손해율-1) × 1로 계산할 수 있다.